

청주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5314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53140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229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C

2. D

3. E

변론종결 2022. 9. 30.

판결 선고 2022. 10. 14.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2290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천시 F 도로 652m²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5. 10. 20. 접수 제250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C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필요로 인해 제기된 것이므로 적어도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병렬

판사강현호

판사이종인